



#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보도자료

-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. 4. 26. 선고 2022고합95 판결 -

2023. 4. 26.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(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, 박연주·홍진국 판사)는 2023. 4. 26. 09:45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음(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. 4. 26. 선고 2022고합95 판결)

## ○ 피고인 1. 강○길

- 한국제강 주식회사(이하 '한국제강')로부터 제강 및 압연 보수작업을 도급받은 '강백산업'의 대표로서,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
- 2022. 3. 16.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강백산업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
- 선고형: 징역 6개월, 집행유예 2년, 사회봉사 40시간

## ○ 피고인 2. 성○식

- 강백산업의 도급인인 한국제강의 대표이사로서,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
- 2022. 3. 16. 발생한 위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,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죄로 처벌
- 그 밖에 위 사고 이후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적발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
- 선고형: 징역 1년, 실형 (법정구속)

## ○ 피고인 3. 한국제강 주식회사

- 피고인 성○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
- 선고형: 벌금 1억 원



## 1. 사안의 개요

### 1) 피고인 지위

#### ▣ 피고인 3. 한국제강 주식회사(이하 '한국제강')

- 1990년 철근 등의 제조·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
- 2013. 12. 종전 한국제강 주식회사(현 한국홀딩스 주식회사)에서 제조업 부문 분할 설립 ⇨ 열간 압연, 압출 및 인발 제품의 제강 제조업체
- 본사와 주력공장을 경남 함안군에 두고 있는 중견기업

#### ▣ 피고인 2. 성○식

-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분할 전 한국제강 및 그로부터 분할 설립된 현 한국제강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

#### ▣ 피고인 1. 강○길

- 한국제강은 2014년경부터 개인사업체인 '강백산업'과 한국제강의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음
- 피고인 강○길은 '강백산업'의 대표로서,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

### 2) 공소사실의 요지

#### ▣ 2022. 3. 16. 방열판 보수작업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

- 피고인 강○길은 2022. 3. 16. 13:50경 한국제강의 야외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김○환(남, 65세)에게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
- 방열판 보수 작업 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'중량물 취급 작업'
  - 무게 1,220kg, 규모 가로 300cm, 세로 140cm, 두께 6~12cm인 철제 방열판



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슬래그(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)를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연삭 작업을 하는 것

- 방열판 상부에 부착된 리프팅 러그홀(벨트 연결 고리)에 섬유벨트를 끼우고, 양 끝 고리를 크레인 훅에 거는 방법으로 줄걸이를 실시한 후, 무선원격제어기로 크레인을 조작하여 섬유벨트에 걸려 있는 방열판을 들어 올려 뒤집어 앞뒷면에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됨

## ● 사고 경위

### - 피고인 강○길은 사업주로서의 ‘안전보건 조치의무’를 위반함

-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, 피해자로 하여금 심하게 손상된 섬유벨트를 방열판 보수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중량물 인양 작업을 제대로 관리·감독하지 않음
- 이 사건 섬유벨트는 오래되어 표면이 딱딱하고, 불티에 용해되거나 굵은 흠이 있고, 기본 사용하중 표시가 없어져 안전성조차 알 수 없도록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음

### - 피고인 성○식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‘안전보건 조치의무’를 위반함과 동시에 경영책임자로서의 ‘안전보건 확보의무’를 위반함

-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: 관계수급인인 강백산업 소속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
-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: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,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·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음 ⇨ 강백산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강○길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함

- 결국 피해자는 방열판을 뒤집기 위해 방열판의 러그홀에 위와 같이 손상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섬유벨트를 샤클 없이, 표면이 날카로운 고리에 직접 연결한 후 크레인을 조작하여 방열판을 들어 올리면서 중량물



과 근접한 위치에서 크레인을 조종하던 중, 때마침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됨 ⇨ 같은 날 18:20경 삼성창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좌측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

- 한편, 위 사망사고 이후 2022. 6. 9.부터 같은 달 10.까지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총 21개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 사항이 적발됨

## 2. 재판 경과 및 쟁점

- ▣ 피고인들은 2022. 12. 14. 제1회 공판기일 및 재판부 변경 후 2023. 3. 24.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각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

- ▣ 이 사건의 쟁점

-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죄 상호간의 죄수
  - 종래 판례와 실무는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음
  - 그렇다면, 위 두 죄와 최근에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죄 상호간의 죄수는 어떠한지 문제됨(검사는,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한편, 위 두 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함)
-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중대재해처벌법')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대한 양형 판단
  -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신설된 개념인 이른바 '경영책임자'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을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인지 문제됨



### 3. 법원의 판단

- ▣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죄 상호간의 죄수

⇒ 모두 **상상적 경합** 관계에 있음

-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죄 상호간 ⇒ **상상적 경합**

-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죄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임

-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,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

- 각각의 의무위반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음

-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죄 상호간

⇒ **상상적 경합**

-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

-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음

- ▣ 경영책임자에 대한 양형 판단 ⇒ **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함이 타당**

- **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경위를 고려함**

-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



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,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,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,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들을 중하게 처벌함

● 이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이유 -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 전과

- **2010. 6. 9.** 분할 전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검찰청-고용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 적발 ⇨ 2011년에 벌금형 처벌
  - **2020. 12. 21.** 지금의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사고 예방 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 적발 ⇨ 2021. 3. 경 벌금형 처벌
  - **2021. 5. 24.**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⇨ 2022. 5. 10.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, 2023. 2. 9.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1,000만원으로 감형되어 2023. 2. 17. 확정
  - **2021. 5. 27.** 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 적발 ⇨ 2021. 11.경 벌금형 처벌
- ⇨ 위와 같은 적발내역 및 처벌전력을 종합하면,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
- ⇨ 2022. 1. 27.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⇨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**2022. 3. 16.** 제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 발생 & **2022. 6. 9.경**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를 계기로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 적발

※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는 판결문 참조 바람. 끝.